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20.11.17.

3. 제재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① 영업점에서 법인고객과 거래시 실제 소유자, 설립목적 등 필수 고객확인 정보를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고위험고객과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의 추가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가 발생한 이후 본점 및 영업점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가 고객확인 업무시 필수 정보의 누락 또는 적정성 여부를 사후 점검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고객확인을 위한 필수적인 고객확인 정보의 전산입력이 누락된 경우 이후 거래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전산시스템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거래체결 이후에는 본점 및 영업점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가 필수 고객확인 정보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② 보험계약자·수익자 변경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내용변경 신청서'를 영업점 방문 전 미리 직접 출력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출력하는 '계약내용변경 신청서'가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계약내용변경 신청서'와 일부 양식이 상이하여

홈페이지 출력용 ‘계약내용변경 신청서’에는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확인란이 없어 사용하는 양식에 따라 고위험 고객의 추가정보 확인 등을 누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내용변경 신청서’ 양식을 통일하는 등 보험계약자·수익자 변경시 강화된 고객확인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③ ○개 금융회사와 방카슈랑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 고객확인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개 저축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서에 제3자 고객확인 업무에 관한 최종 책임소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객확인 업무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동 저축은행들과 고객확인 정보 제공 범위 및 책임소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업무제휴계약서를 재체결하시기 바람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고객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식별·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 ○개의 추출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보험사기적발시스템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건은 수사기관의 기소가 결정된 이후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및 보고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의 기소 결정 이후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하는 경우 범죄 발생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 의심거래 보고의 실익이 낮고 보험사기 대응이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사기적발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시점을 수사기관 신고시로 변경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3)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 불합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절차상 상품출시전 자금세탁위험 검토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자금세탁위험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상품이 출시되거나 일부 상품군은 자금세탁위험 사전검토 및 준법감시인의 결재 없이 출시된 사례가 있어

모든 상품에 대하여 신상품 출시전 자금세탁위험 검토 및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